

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



성 북 구
(세무1과)

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2.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

나. 사회재난*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* 이태원 사고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선포(‘22.10.30.)

2. 주요내용

가. 감면대상자

-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
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나. 구세 감면내역

- 재산세
 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【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】
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○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【지방세 감면규모 등】

-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,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